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 4. 25. 제천시장
- 회부일 : 2007. 4. 25.
- 상정일 : 2007. 5. 2.(제1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가.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여 관내 소재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식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제3조)
- 지원대상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제4조)
-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제5조)
- 지원신청 : 고등학교는 시장,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종합 신청(제6조)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장 포함 15인이내(제7조)
- 지도감독 : 교육장은 우수농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法的檢討】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8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에 의거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음.
- 또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11월 2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行政的檢討】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므로 제천시 급식대상 학교와 학생수 현재의 급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예산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 복지분야에서 지급되고 있는 지원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수농수산물의 선별 및 확보 공급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안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안에 대한 처리내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안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례안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 하반기 시범 실시 후 검토한다고 한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세심히 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의 지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의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조례를 제정한 시군현황, 우수농산물에 대한 충분한 물량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특히 민간기구의 제안사항중 필요한 조항은 규칙 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유영화 의원)
- 제천지역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어려움으로 농협과 연계를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에 농협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은 어떠한지?(김명섭 의원)
- 제6조의 지원신청기준에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 학교 지원여부에 의문 생김으로 향후 조례 제정시 전문가 자문을 받는등 문구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김병창 의원)

나. 답변요지 <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

- 양평군청, 나주시청과 충북은 청원, 음성, 충주, 영동이며 우수농산물을 관리하는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등을 통한 공급은 어려운 실정 이므로 금년도에는 소요량의 30%정도 수준으로 시행할 예정임
-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최대한 고려 하겠음.
- 조례 내용상 혼동이 가지 않도록 하겠음.

5. 소수의견

“ 없음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